

##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. 6. 19 조례 제269호  
개정 2004. 2. 27 조례 제502호  
2005. 10. 5 조례 제610호  
2005. 12. 31 조례 제78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.  
<개정 2005. 10. 5, 2005. 12. 31>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2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10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31 조례 제78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